

예산총칙

2008년도 [2회추경예산]

* 제1조 :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 계			1,247,110,027	37,413,301
일	반	회 계	903,571,972	27,107,159
특	별	회 계	343,538,055	10,306,142
기타특별회계	소 계		210,550,468	6,316,514
	공 유 재 산 특 별 회 계		8,028,270	240,848
	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	35,850	1,076
	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	4,209,550	126,287
	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	1,115,000	33,450
	장 기 미 집 행 특 별 회 계		1,556,535	46,696
	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	28,815,082	864,452
	도 시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		3,695,960	110,879
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	27,806,057	834,182
	도 시 철 도 특 별 회 계		135,288,164	4,058,645
공 기 업	소 계		132,987,587	3,989,628
	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	50,663,365	1,519,901
	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	82,324,222	2,469,727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’ 과 같다. 다만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* 제3조 :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 와 같다.

* 제4조 :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조서’ 와 같다.

* 제5조 :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 와 같다.

* 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76,881,935천원으로 한다.

* 제7조 :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* 제8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